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가단5275816 판결 [사해행위취소]

##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상헌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4. 4. 18.

판 결 선 고 2024. 5. 30.

##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8,142,632원 및 그중 7,796,114원에 대하여 2023.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23. 5.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23. 5. 23. 접수 제711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여 오다가 2023년경 초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23. 7. 18. 기준으로 연체중인 신용카드대금이 8,142,632원(= 원금 7,796,414원 + 수수료 및 연체료 등 346,218원)이고, 약정 연체이율은 연 20%이다.

나. 피고 B는 2023. 5.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광주지방법원 2023. 5. 23. 접수 제7119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고, 원고 이외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다고 하면서 무자력 상태임을 인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상태,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8,142,632원 및 그중 원금 중 원고가 구하는 7,796,114원에 대하여 2023.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무상급부행위인 증여는 소극재산의 감소 없이 적극재산만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 C의 선의를 인정할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이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영

별지